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7. 09. 14.

발 의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1. 제안경위

2007.9.14.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제안사유

2007.5.11 지방자치법이 법률제8423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안 제1조, 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13조 내지 제116조 및 제146조

## 5. 개정조례(안) : 별첨

## 6.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7.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법 제116조”로 하고, 동조제5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명</b>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범위)</b> 위원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구”라한다)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법 제104조 내지 107조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li> <li>4. (생략)</li> <li>5.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li> </ol>	<p><b>제명</b>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p> <p><b>제1조(목적)</b> ----- 「지방자치법」 제42조-----</p> <p>-----</p> <p>-----</p> <p>-----</p> <p>-----</p> <p><b>제2조(범위)</b>-----</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법 제113조 내지 법 제116조-----</li> <li>-----</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법 제146조-----</li> <li>-----</li> </ol>